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최저자본금 및 은산분리 규제를 중심으로-

이시직* · 이하정**

ICT 고도화에 따른 관련 산업과의 '융합(Convergence)'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단연 금융과 IT의 융합인 '핀테크(Fintech)' 열풍 속에서 정부는 핀테크의 정점인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정부기관·은행·민간·법무법인·IT기업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12차례 논의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는 4월 16일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후, 6월 18일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후 금융당국은 7월 10일 「은행업 인가매뉴얼」을 대외 공개하고, 7월 22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연내 예비인가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본 인가를 통해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예정이다.

ICT 기업들은 금융권 등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발전,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그리고 해외금융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현행 은행법 상 최저자본금, 은행 주식보유 제한 등 다양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인터넷전문은행을 특수한 형태로 인정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지, 전통은행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기존의 은행법을 개정한다면 진입규제를 어느 수준으로 완화해야하는지 등 다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분석실 연구원, (043)531-4357, potential47@kisdi.re.kr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dike827@naver.com

목 차

I. 서 론 / 2
II.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 및 과거 국내 도입 관련 논의 동향 / 3
1.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의 / 3
2. 과거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 관련 논의 / 5
III.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현황 / 5
1. 미 국 / 5
2. 일 본 / 7
IV.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요건의 검토 / 9
1.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 / 9
2. 최저자본금 요건의 법률적 검토 / 11
3. 은산분리 요건의 법률적 검토 / 13
V. 결 론 / 20

I. 서 론

스마트 디바이스(Smart Devices) 활용의 보편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Cloud Computing Service), 빅 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등 ICT 고도화에 따른 관련 산업과의 ‘융합(Convergence)’이 가속화 되고 있다. ICT 내에서의 융합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교통, 의료, 로봇,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ICT와의 융합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단연 금융과 IT의 융합인 ‘핀테크(FinTech)’ 산업의 활성화가 화두에 놓여있다. 그렇다면 금융과 IT의 융합인 ‘핀테크’는 과연 새로운 현상인가? 아니면 기존 금융의 미래 비즈니스 모델인가? 등 수많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핀테크’의 중심이 어떤 Player인지 즉, 금융이 IT에 접근하는 현상으로 볼 것인지, IT에서 금융으로 접근하는 현상으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¹⁾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들의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증가하면서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서도 ‘핀테크’가 부각되면서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발전,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해외금융 시

1)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발달, 인터넷·모바일 banking 등 금융의 전산화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실제로 해외 주요국에 비해 결제, 송금, 예금, 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로 인정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IT 접근보다는 비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전통적인 금융회사와의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핀테크’의 한 형태로서 현안이 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²⁾, 국내 ICT기업들도 금융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³⁾

본 고에서는 지난 7월 10일에 발표된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인가 매뉴얼」의 법률적 요건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제도의 개념 및 과거 국내 도입 논의(Ⅱ)를,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설립 현황(Ⅲ),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인가요건, 특히 최저자본금과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보유 제한 규제를 중심으로 검토(Ⅳ)하고자 한다.

Ⅱ.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 및 과거 국내 도입 관련 논의 동향

1.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의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의 정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을 중심으로 제공된 온·오프라인 금융서비스에서 비금융회사(또는 비은행금융회사)가 온라인채널을 통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⁴⁾, 과거 은행지점에서만 은행

2) 2015년 1월부터 정부기관·은행·민간·법무법인·IT회사 등 TF를 구성하여 12차례 회의를 가졌다. TF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는 2015년 4월 16일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후, 6월 18일에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10일 「은행업 인가 매뉴얼」을 공개, 7월 22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3) 현재 다음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인터파크는 SKT, NH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등 10개 업체와, KT는 교보생명과 우리은행 등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4) 한국은행이 집계한 ‘주요 금융기관 점포수(해외 영업점 제외)’ 통계에 따르면, 일반은행과 특수은행(농협·수협·기업·산업은행 신용사업 부문)의 국내 영업점은 작년 말 현재 7천433개로, 1년 전보다 268곳이나 줄었다. 은행의 영업 점포수(연말 기준)는 2013년(7천 701개)에 46개가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는 폭이 훨씬 커지면서 2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은행의 영업 점포수(연말 기준)는 2009년 7천 422개에서 2010년 7천 504개, 2011년 7천 623개를 거쳐 2012년 7천 747개로 정점을

업무가 가능했던 것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금융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나온 ‘Internet Primary Bank’, ‘Digital Bank’ 등의 용어에서 어느 정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가·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단편·일률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일반적 특징으로 정의를 한다면, ‘고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위하여 소수의 지점 또는 은행 지점을 통한 대면거래를 배제하고, 인터넷을 주된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은행’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는 지점없이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 은행 업무를 하는 것이 목표이겠지만, 상품(대출, 투자 등)에 따라 고객이 오프라인을 통해 상담하고 직접 거래를 원하는 경우 등 온라인 채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상품에 대한 상담창구의 개설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⁵⁾

<표 1> 전통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비교

	전통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핵심채널	지점(Branch)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영업시간	평일 9시~16시	24시간, 365일
상품	온/오프라인 상품 구분	구분 없음
서비스	Full Banking Service	주로 소매금융 특화
기타	대면 서비스를 통한 전문성	비용감소를 통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자료: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4. 9. 24)

쳤다. 금융기관 중 생명보험사의 점포도 작년말 현재 3천 683개로, 1년 전(3천 951개)보다 268개가 줄고 우체국 예금(2천 770개→2천 666개)이나 상호저축은행(339개→327개)도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신탁계정을 보유한 은행, 증권, 보험사 점포(9천 250개→8천 724개)는 같은 기간에 526개가 줄고 자산운용사의 펀드상품을 파는 은행, 증권사 등 점포(9천 594개→8천 925개)는 669개가 감소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09/0200000000AKR20150309149500002.H TML?input=1195m>>(2015. 8. 20. 최종방문).

- 5)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인 Sony Bank와 Aeon Bank 등은 지점을 통한 오프라인 상담창구를 개설 하여 실제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다.

2. 과거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 관련 논의

최근 국내에서 금융부문에 대한 선진화와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핀테크(Fintech)’가 부각되면서, 소위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과 관련한 활발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과거 2차례(2001년, 2008년)에 걸쳐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2001년에는 대기업(SK Telecom, 롯데 등)과 벤처회사(안철수연구소, 이네트퓨처 등)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V-Bank’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대기업 중심의 추진방식, 은산분리 규제, 최저자본금 확보, 외국계자본 유치 실패 그리고 금융실명제 등의 제도적 난제로 인하여 무산되었고, 2008년에는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고자 하였다.⁶⁾ 하지만 같은 해 9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었고, 은행건전성 우려, 수익모델 취약성, 과당경쟁 우려 등으로 입법에 실패하였다.

Ⅲ.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현황

1. 미 국

미국의 경우 1995년 세계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2000년 초반까지 27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생겨났다. 하지만 초기 미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부분 벤처회사나 독립계에 의해 설립되었던 탓에 금융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았고, 고객을 위한 금융수익모델 발굴 실패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대부분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조기에 사업을

6) 2008년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하여 ① 업무범위, ② 최저자본금 요건의 완화, ③ 금융실명제 우회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중단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금융전업주의가 완화되면서 보험, 증권, 카드 등 비은행금융회사가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주도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미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주체에 따라 비은행금융그룹(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등)의 자회사 형태와 기업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Charles Schwab Bank(2003년)와 E*Trade Bank(1933년)는 증권사가, Discover Bank(1911년)와 American Express Bank(2000년), Barclays Bank Delaware(2001년)는 카드사가, Principle Bank(1998년), Nationwide Bank(1998년), State Farm Bank(1999년)는 보험사가 설립주체이고, Ally Bank(1919년), BMW Bank of North America(1999년)는 제조업체가 설립하는 등 제2금융권과 기업계가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표 2> 미국의 10대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은행명	설립주체	설립시기	주요 제공서비스
Ally Bank	제조업체 (GM 계열 여전사)	2004	기업대출
American Express	금융회사(카드사)	2000	기업대출, 개인대출(신용카드)
Barclays Bank Delaware	금융회사(카드사)	2001	개인대출(신용카드)
BMW Bank	제조업체 (BMW 계열 여전사)	1999	개인대출(자동차대출)
Charles Schwab Bank	금융회사(증권사)	2003	유사증권, 부동산담보대출
CIT Bank	금융그룹	2000	기업대출
Discover Bank	금융회사(카드사)	1911	개인대출(신용카드)
E*TRADE Bank	금융회사(증권사)	1933	유가증권, 부동산담보대출
Nationwide Bank	금융회사(보험사)	1998	부동산담보대출, 개인대출(자동차)
Sallie Mae Bank	금융회사	2005	개인대출(학자금)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2015) 자료 수정·보완

200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뱅킹 이용증가하고, 온라인 금융거래에 대한 고객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와 함께 사업모델 차별화 노력이 더해지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세는 가속화되었다. 특히 Charles Schwab Bank는 기존의 증권거래 고객을 기반으로 보통예금, 당좌계좌 등 예금을 조달하여 유가증권을 운영하고 ‘Quicken Loans’이라는 온라인 대부업체와 제휴하여 모기지 상품을 취급하였으며, Ally Bank는 GM의 전속시장을 기반으로 자동차 딜러를 대상으로 기업대출과 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오토론 등 자동차 대출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등 모회사의 특징에 맞게 기존은행과 다른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 일본

일본 금융청은 ‘잃어버린 10년’의 과정 속에서 약화된 금융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기업종(타업종)의 은행업 진출 등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에 대한 면허 심사 및 감독 지침(2000년)」을 발표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이 본격화 되었다. 동 지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은 독자적인 제도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은행’⁷⁾의 한 형태로 인정되어 현재 6개의 인터넷전문은행, 2개의 유사모델 은행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주도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한 반면,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 통신, 증권, 유통 등 다양한 타업종과의 합자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특화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Japan Net Bank(2000년)는 SMBC(은행)과 Nippon Life Insurance(보험), Fujitsu(전자)가 합자하여 온라인쇼핑, 온라인 증권 등 결제 중심의 은행 업무를 전개하였고, Rakuten

7) 일본에서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 함은 전통적인 은행과는 다른 형태를 갖춘 은행이라 일컫는데, 그 종류로는 ① 인터넷전문은행, ② 상업시설과의 연계를 주체로 하는 은행, ③ 중소기업으로의 용자를 주체로 하는 은행, ④ 파산한 은행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주체로 하는 은행 등이 있다.

〈표 3〉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은행명	설립주체	설립시기	주요 제공서비스 및 특징
Japan Net Ba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BC(은행) • Yahoo Japan가 인수 • Nippon Life Insurance (보험사) • Fujitsu(전자회사)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 • 결제업무의 비중이 높음
Sony Ba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NY Financial Holdings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및 투자관련 업무 중심 •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 비금융기업이 설립한 사례
Rakuten Ba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kuten(전자상거래)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쇼핑과 결제 결합 • 그룹 내에서 구매 사이클 조성 • 비금융기업이 설립한 사례
SBI Sumishin Net Ba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TB(신탁은행) • SBI Holdings(금융그룹)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과 SBI증권의 연계
Jibun Ba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MU(은행) • KDDI(이동통신)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사와 대형은행의 결합 • 스마트폰 뱅킹이 가장 잘 구축 •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Daiwa Next Ba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iwa Securities Group (증권사)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 비은행금융기업이 설립한 사례
Seven Bank(유사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ven & I Holdings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업체가 대주주 • 비금융기업이 설립한 사례
Aeon Bank(유사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eon Financial Group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업체가 대주주 • 비금융기업이 설립한 사례

출처: 공경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이베스트투자증권 자료 수정·보완

Bank(20001년)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라쿠텐이 Mitsui Sumitomo Insurance (보험) 등과 합자하여 온라인 결제업무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SMTB(신탁은행)과 SBI Holdings(금융그룹)이 합자하여 설립된 SBI Sumishin Net Bank(2007년)와 Daiwa Securities Group(증권)이 설립한 Daiwa Next Bank(2011년)는 증권사와 서비스를 연계하여 증권사 고객들에게 자산운용의 편의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표 4〉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유형에 따른 분류

유형1	설립주체에 따른 분류	은행이 타업종과의 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ibun Bank • SBI Sumishin Net Bank • Japan Net Bank
		비금융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kuten Bank • Sony Bank • Seven Bank • Aeon Bank
		비은행금융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iwa Next Bank
유형2	성향별 특징에 따른 분류	결제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apan Net Bank • Rakuten Bank
		대출 및 투자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ny Bank
		증권계좌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I Sumishin Net Bank • Daiwa Next Bank
		모회사와의 강한 유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ibun Bank

또한 Jibun Bank(2008년)는 일본 최대 은행인 BTMU(은행)과 2대 통신사인 KDDI(이동통신)가 설립하였으며, 대형 은행의 노하우와 수많은 KDDI 이용자를 기반으로 젊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모바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한편, Sony Bank(2001년)는 Sony Financial Holdings(금융그룹)와 Sakura Bank가 합자하여 ‘Sony’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예금을 비롯한 투자, 대출상품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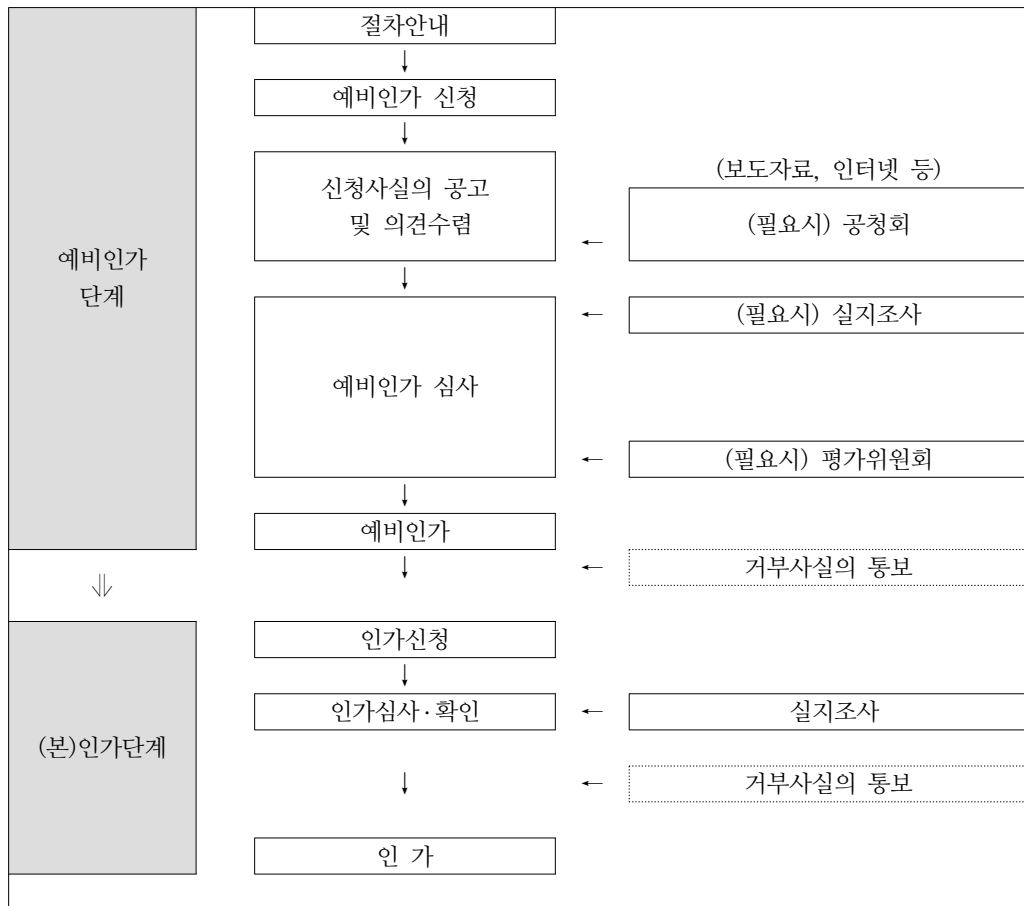
IV.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요건의 검토

1.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

현재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도적 규정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는 일반은행업 인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현행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림 1]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



출처: 금융위원회(2015), 「은행업 인가매뉴얼」

일반적으로 은행의 인가절차는 크게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나뉜다. 예비인가의 경우, 법적 효력이 있거나 의무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본인가 심사에서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인적·물적 요건 구비 등 수많은 인가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위해 미리 인가심사기준에 따라 예비심사를 받고, 이 후 신청자는 예비인가의 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금융당국의 본인가 심사를 받는다.⁸⁾

2. 최저자본금 요건의 법률적 검토

(1) 개요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한 특별한 인가요건을 정한 법률은 없다. 다만 「은행법」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시 기존의 은행업 인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지, 달리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 인가요건을 완화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현행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최저자본금 1,000억 원 이상(지방은행의 경우 250억 원 이상)을 갖추고(은행법 제8조 제2항 제1호),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위와 같은 자본금을 유지(은행법 제9조)하도록 하고 있다.

(2) 검토

미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요건으로써의 최저자본금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인가 시 금융 감독기관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최소자본금을 20억 엔(185억 원)이상, EU는 500만 유로(60억 원)이상으로, 해외 주요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법정 최저자본금의 기준이 없거나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금융당국은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계획하는 기업들에게 최저자본금 요건을 현행 은행법에 따라 시중은행 수준인 1,000억 원을 유지할지, 지방은행의 250억 원 수준으로 할지 아니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간지점인 500억 원 등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⁹⁾ 무엇보다도 은산분리 규정으로 인하여 대규모

8) 지난 7월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을 대외 공개하여 9월 중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받고, 예비인가 심사(10월~11월), 예비인가(12월) 후 내년 상반기에 본인가를 통해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5. 6. 18).

9) 경실련이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 대해 경제·경영·법학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29일부터 약 3주 간 전자우편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자본금을 시중

자본을 가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ICT기업 등 다양한 비금융 및 비은행 금융주체들이 금융 산업으로의 신규진입을 장려하고,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최저자본금 기준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중요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 은행법 제정 당시 화폐의 가치로 시중은행 1,000억 원, 지방은행 250억 원의 자본금 요건을 정하였지만 화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변화한다는 점에서, 현재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설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은행법 제정 당시의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1,000억 원, 지방은행의 500억 원 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간지점은 500억 원 등을 적용한다는 논리는 정당화되기 어렵고, 실제 국내의 지방은행 중 자본금이 가장 낮은 제주은행도 2014년 말 기준 1,106억 원으로 지방은행 최저자본금 요건인 250억 원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¹⁰⁾ 은행법상의 최저자본금 요건은 무의미한 숫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주요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최저자본금 기준은 우리나라보다 낮긴 하지만 실제 해외에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을 살펴보면¹¹⁾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설립 자본금을 상회하고 있고, 대부분의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초기에는 대규모 적자를 경험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 시중은행의 자본금 기준 이상이 되어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은행의 절반인 500억 원으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50.59%(43명)으로 나타났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최저자본금 수준으로는 ‘시중은행과 동일한 1000억원’이 58.14%(25명)으로 가장 높았다(보도자료, 2015. 8. 17). 한편,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은행법개정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에는 법정 최저자본금의 기준이 250억 원이다.

10) 금융감독원, 「2014년 은행경영통계」, 2014. 9. 29.

11) 예를 들어 미국의 Alost Bank는 1억 7,285만 달러(1,910억원), 일본의 경우 Japan Net Bank, SBI Net Bank, Jibun Bank는 각 200억엔(1,854억원), Sony Bank는 375억엔이며, EU의 Uno-e-Bank는 8,060만 유로(960억원), Fidor Bank는 1,242만 유로(149억원)가 설립 당시 최저자본금이다.

3. 은산분리¹²⁾ 요건의 법률적 검토

(1) 개요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일반은행의 특수한 형태로 보아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거나 은행법의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제도로 정착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현행 은행법 상 규제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의 중심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데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은산분리’ 규제가 핵심이다. 만약 인터넷전문은행을 일반은행의 특수한 형태로 인정한다면,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보유한도를 어느 수준으로 적용할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에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지분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현행 은행법 상 ‘비금융주력자’의 정의 규정 자체를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특별히 완화 적용할 것인지 등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의 취지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했을 때의 부작용을 함께 고려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¹³⁾

12) 국내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나,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소유는 불가피하게 인정되므로 필자는 ‘금산분리’ 용어 보다는 ‘은산분리’ 용어를 사용한다.

13) 경실련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한도를 50%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71.76%(61명)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고, 적절한 소유구조 방안으로는 ‘현 은행법대로 4% 범위내에서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소유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문가 46.15%(30명)가 답하는 등 현 은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보도자료, 2015. 8. 17). 한편,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은행법개정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는 50%이다.

(2) 미국¹⁴⁾

미국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 보유에 대하여 일반 은행의 지분 취득과 달리 취급하는 별도의 법령 및 감독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일반 은행과 동일한 인가기준이 적용된다. 미국은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BHCA)에 따라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은행지주회사)는 직·간접적으로 비은행회사를 지배할 수 없고, 비은행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철저한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해 왔다.¹⁵⁾ BHCA는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① 직·간접적으로 25%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② 25%까지는 아니지만 5% 이상의 은행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사실상 은행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은행지주회사로 정의된다.¹⁶⁾

즉, BHCA에 따라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을 25% 이상 취득하거나 5% 이상 취득하면서 은행을 지배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로서 감독규제를 받게 되므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한 25%까지 은행 지분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이 아닌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립 2년 이후부터는 은행(은행지주회사) 이외의 회사 지분 소유가 금지되고 은행업이나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이외의 업무 영위도

14) 미국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보다는 은행의 산업 참여를 금지하는 쪽에서 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1933년 Glass-Steagall 법을 통해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분리가 이루어져서 은행이 증권업무를 하는 계열회사를 둘 수 없게 되었다. 즉, 증권회사는 기관투자가로서 기업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는데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함으로써 은행이 증권회사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은행과 기업을 분리하게 되었다. 이후 금융현대화법이라 불리는 Gramm-Leach-Bliley Act가 1999년에 제정되면서 Glass-Steagall 법에서 금지되었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원칙이 폐지되면서 금융지주회사가 은행과 증권회사를 동시에 자회사로 두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산업자본과 은행의 분리는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다.

15) BHCA 제정 당시 은행지주회사는 ‘두 개 이상의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은행을 하나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법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따라서 산업자본이 하나의 은행을 소유하는 형태(One-Bank Holding Company)의 금산 결합이 오랜 기간 계속되었으며 그 수도 상당히 많았다. 하지만 1970년에 법 개정으로 하나의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도 은행지주회사법에 의해 규제되게 되었다.

16) 12 U.S.C. § 1841(a)(2)

금지되어 있다.¹⁷⁾

이후 미국의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은 2001년 인터넷전문은행 특수성을 감안한 인가 지침을 마련하여 통화감독청(OCC)와 각 주의 은행청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담당하고, 통화감독청(OCC)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및 연방준비위원회(FRB)가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5> 미국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지침 주요 내용

- ▶ 1개 이상의 오프라인 영업점 설치
- ▶ 기본자본비율 8% 이상 유지
- ▶ 유동성 위험에 대비한 비상자금 조달계획 마련
- ▶ 금리, 자산가격, 성장성 등 외부환경에 대비한 영업계획 수립
- ▶ 계좌개설 시 고객확인 의무 강화
- ▶ 재해발생에 대비한 재해복구계획 마련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2014)

(3) 일본

일본의 경우 은행법상 은행 지분 보유 규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 의결권의 5% 이상을 소유한 자는 금융청장에서 보고하고¹⁸⁾, 전체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주요주주¹⁹⁾의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²⁰⁾ 우리나라는 금융주력자와 비금융주력자를 나누어 법률로 엄격히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법률상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다만,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주요주주가 되기 위한 절차인 금융청의 인가단계에서 사실상 제한되었다. 이후 2000년 금융청이 침체된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업종의 은행 진출을 허용하는 인가지침을 발표하여 비금융

17) 12 U.S.C. § 1843(a)(1)(2), 12 U.S.C. § 1843(c)(8)

18) 일본은행법 제52조의2의11 제1항

19) 일본은행법 제2조 제9항

20) 일본은행법 제52조의9 제1항

주력자도 은행 전체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본격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하게 되었다.

(4) 우리나라

현행 은행법에서는 은행 지분 보유 규제와 관련하여 동일인을 금융주력자와 비금융주력자로 나누어 은행 지분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주력자의 경우, 은행 주식의 10%까지 보유가능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100%까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자본으로 대표되는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은행 주식의 4%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10%까지 취득할 수 있으나 비금융주력자의 입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주식을 가질 실익이 없다고 본다면 결국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4%까지 밖에 취득하지 못한다. 한편으로 은행법에서는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별도로 하고 있고, 또 은행이 대주주의 계열사 지분을 취득하려고 할 때에도 지분취득 규제를 받고 있다.

<표 6>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규정

은행법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려는 은행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은행 지분 보유 규제를 적용받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인가? 현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9호에서 ‘비금융주력자’를 정의하고 있는데 첫째,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25% 이상인 경우 비금융주력자로 본다(은행법 제2조 제1항 9호 가목). 예를

들어 A금융그룹 중 제조업을 하는 계열사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이 A금융그룹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25%를 넘는다면 자본의 규모와 상관없이 비금융주력자가 되는 것이다. 둘째,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조 원)이상인 경우에도 비금융주력자로 본다(은행법 제2조 제1항 9호 나목). 예를 들어 A금융그룹의 총자산 100조 중에서 A금융그룹의 지분을 가진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3조 원이라면 자본총액의 비율과는 상관없이 비금융주력자가 된다. 즉, 총자산이 100조인 A금융그룹 중 자산총액이 3조 원인 비금융회사가 있다가 가정할 때, 은행법 제2조 제1항 9호 가목에 따르면 자본총액 합계액의 3%이므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은행법 제2조 제1항 9호 나목에 따르면 2조 원을 초과하므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

〈표 7〉 ‘비금융주력자’의 정의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9. “비금융주력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p> <p>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p>

(5) 검토

현행 은행법에서는 재벌의 자본집중과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지분은 4%를 초과할 수 없고, 4%를 초과하더라도 의결권 행사 없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10%까지 은행 지분 보유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은행 소유 구조 문제로 인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은행 지분 소유는 4%를 초과할 수 없는 바, ICT기업을 비롯한 비금융주력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유인이 전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ICT기업이 모바일 플랫폼과 수많

은 고객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시키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은행 소유구조 속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성공 사례에서 보면 대부분 모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특화된 사업영역을 구축하여 금융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열쇠는 ‘모기업’과의 컨소시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5년 7월 10일에 발표된 「은행업 인가매뉴얼」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기준에는 은행법에서 규정하는 은행지분소유 제한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 및 사업모델의 안전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가능성 등 다양한 인가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은행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절할 것, ②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사업계획인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④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추상적·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나아가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도 붙일 수도 있다(동조 제4항).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에게 은행주식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모든 산업자본이 은행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인가 시 금융당국에게 인정되는 포괄적인 재량권으로 은행소유구조뿐만 아니라 다른 인가요건들을 엄격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업 진출을 제한할 수 있고, 나아가 일본 사례와 같이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업을 영위를 허용한다고 할지라도 다양한 의무부과 등 사후적 통제장치²¹⁾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21) 일본의 경우,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이 허용되면서 모회사의 사금고화 방지,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사업 리스크 차단,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주식 처분명령, 의결권 정치 명령, 특히 전체 의결권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는 주요주주는 은행경영의 건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일본 은행법 제52조의14)하는 등 사후적 보완장치를 두고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을 허용하였으며, 우리나라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 대주주 발행 지분 보유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법 상 비금융회사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발전과 금융소비자 및 국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은행 경영의 건전성 및 독립성 확보 장치, 모회사의 리스크 관리 등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다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고, 금융당국이 가진 인가여부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과 사후적 통제장치를 통해 충분히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는 비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25% 이상인 경우(가목)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나목)에 ‘비금융주력자’로 정의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는 대기업의 사금고화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비금융주력자’ 정의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일반 비금융사업자도 모두 포함될 여지가 있다. 즉, 자본규모와 상관없이 자기자본이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25%만 넘으면 비금융주력자가 되어 소위 4% 규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A그룹의 자산총액이 100조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비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이 25조 원을 넘는 경우와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인 B그룹의 비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이 250만 원인 경우 모두 비금융주력자에 포함된다. 또한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나목에서는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 원 이상이면 비금융주력자로 정의하는데, 이는 2002년 은행법 개정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08년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이 5조 원으로 상향되었으나²²⁾, 현행 은행법은 아직도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이 2조 원 이상이면 비금융주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산총액이 3조 원인 A기업이 은행법 상 비금융주력자에 해

2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개정된 2008년 이후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수는 79개(2008년)에서 48개(2009년)으로 약 31개가 감소했으며, 이후 53개(2010년), 55개(2011년), 63개(2012년), 62개(2013년), 63개(2014년), 61개(2015년)라고 밝혔다<<http://kftc.tistory.com/4627>>(2015. 8. 25일 최종방문).

당하지만 은행법 상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소유규제를 완화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향후 A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성장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A기업의 자산총액이 5조 원이 될과 동시에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중단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A기업이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하는 중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성장하였으므로 별도로 규제할 필요가 없는지 등이 법률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은행법 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자산총액의 기준을 상향할 것인지 또는 은행법 상 비금융주력자 정의 규정을 유지한다면, 은행법에서 정하는 2조 원 이상의 ‘비금융주력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5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사이의 간극에 존재하는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책과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금융시장의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그리고 해외 금융시장에서의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과 IT의 융합인 ‘핀테크(Fintech)’의 열풍이 가속화 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지난 6월 18일 금융위원회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7월 10일에 「은행업 인가매뉴얼」을 공개하는 등 핀테크의 정점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국내 도입에 관련한 인가요건, 특히 진입장벽의 중심요소가 되는 최저자본금과 은산분리 규제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적·법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행 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기존 은행의 최저자본금 요건인 1,000억 원을 유지할 것인지, 지방은행의 250억 원 수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간지점인 500억 원 등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2014년 은행

경영통계에 따르면 현 지방은행 중 자본금이 가장 낮은 제주은행도 1,106억 원으로 현행 은행법 상 지방은행 최저자본금인 250억 원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 그리고 기본적인 전산시스템 구축과 고정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 시중은행 자본금을 상회하였을 때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현행 은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최저자본금은 은행법 제정 당시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정립되었기 때문에 1,000억 원, 250억 원, 500억 원 등의 논리는 현실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해외의 인터넷전문은행들도 법정 최저자본금을 상회하여 실제 인가를 받는 등 법률상 최저자본금 규정은 무의미한 숫자에 불과한 만큼 최저자본금 요건이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장벽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데 소위 ‘은산분리’ 규제가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재벌의 자본집중과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산업자본으로 대표되는 ‘비금융주력자’ 대상기준을 별도로 정의하고,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보유 규제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먼저 ‘비금융주력자’ 대상의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가목은 자본규모와 관계없이 자기자본이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25%를 넘으면 비금융주력자의 대상이 되므로, 자기자본이 25조 원(그룹 자산총액은 100조 원)인 비금융회사와 자기자본이 250만 원(그룹 자산총액은 1,000만 원)인 비금융회사 모두 ‘비금융주력자’의 대상이 되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비금융사업자도 모두 비금융주력자가 되어 은행지분소유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따르면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 원 이상이면 ‘비금융주력자’의 대상이 된다. 이는 2002년 은행법 개정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준(2조 원)이 그대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이 5조 원으로 상향된 만큼 은행법 상 비금융주력자 기준인 2조 원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5조 원 즉, 비금융주력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 간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당국의 정책과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비금융주력자들에게는 은행법 제16조의2의 은행지분보유 제한규정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유인이 전혀 없다.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을 4%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고, 의결권 행사 없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10%까지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모바일 플랫폼과 수많은 고객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획기적인 사업계획을 가진 ICT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현행 은행 소유 구조 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미국, 중국 등 글로벌 ICT기업들이 전 세계 핀테크 시장 진출을 가속화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IC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여 해외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또한 ICT기업을 비롯한 비금융회사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지라도, 금융시장의 발전과 금융소비자 및 국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은행 경영의 건전성, 독립성 확보 장치, 모회사의 리스크 관리 등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다면, 금융당국의 인가여부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과 사후적 통제장치로 충분히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4), “해외 인터넷 전문은행 동향 및 국내 이슈 점검”, 14-73호, 2014. 9. 24.
- 공경순 (2015), “일본의 6개 인터넷 은행을 통해 배우는 교훈”, 인터넷 전문은행의 방향성 및 성공전략 세미나 자료집, 2015. 3. 10.
- 금융감독원 (2014), 2014년 은행경영통계, 2014. 9. 29.
- _____ (2015), 「은행업 인가매뉴얼」, 2015. 7. 10.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5),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및 현황”, 주간 금융경제

동향(2015-3), 2015. 2. 11.

이베스트투자증권 (2015),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 Zero Sum? or Plus-Sum”,
2015. 4. 6.

조정래 (2015),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구조 개선 방안”, 한국형 인
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 자료집, 2015. 4. 26.

경실련 (2015. 8. 17),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전문가 설문 결과 발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15. 6. 18),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 서비
스를 손쉽게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연합뉴스 (2015. 3. 10), “지난해 국내 은행 영업점 268곳 문 닫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블로그 <<http://kftc.tistory.com/4627>>